

# 수장고 간이 자동소화설비 설치공사 과업지시서

2019년 9월

경기도박물관

# 수장고 간이 자동소화설비 설치공사 과업지시서

## 1. 과업 명칭

경기도박물관 수장고 간이 자동소화설비 설치공사

## 2. 과업 목적

우리박물관 리뉴얼의 일환으로 하론소화설비 전체의 교체공사에 따른 수장고내 청정소화설비 설치때 까지 소방시설로 캐비닛형 자동소화설비를 간이로 설치하여 수장고내 유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치공사임.

## 3.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경기도박물관 수장고 간이 자동소화설비 설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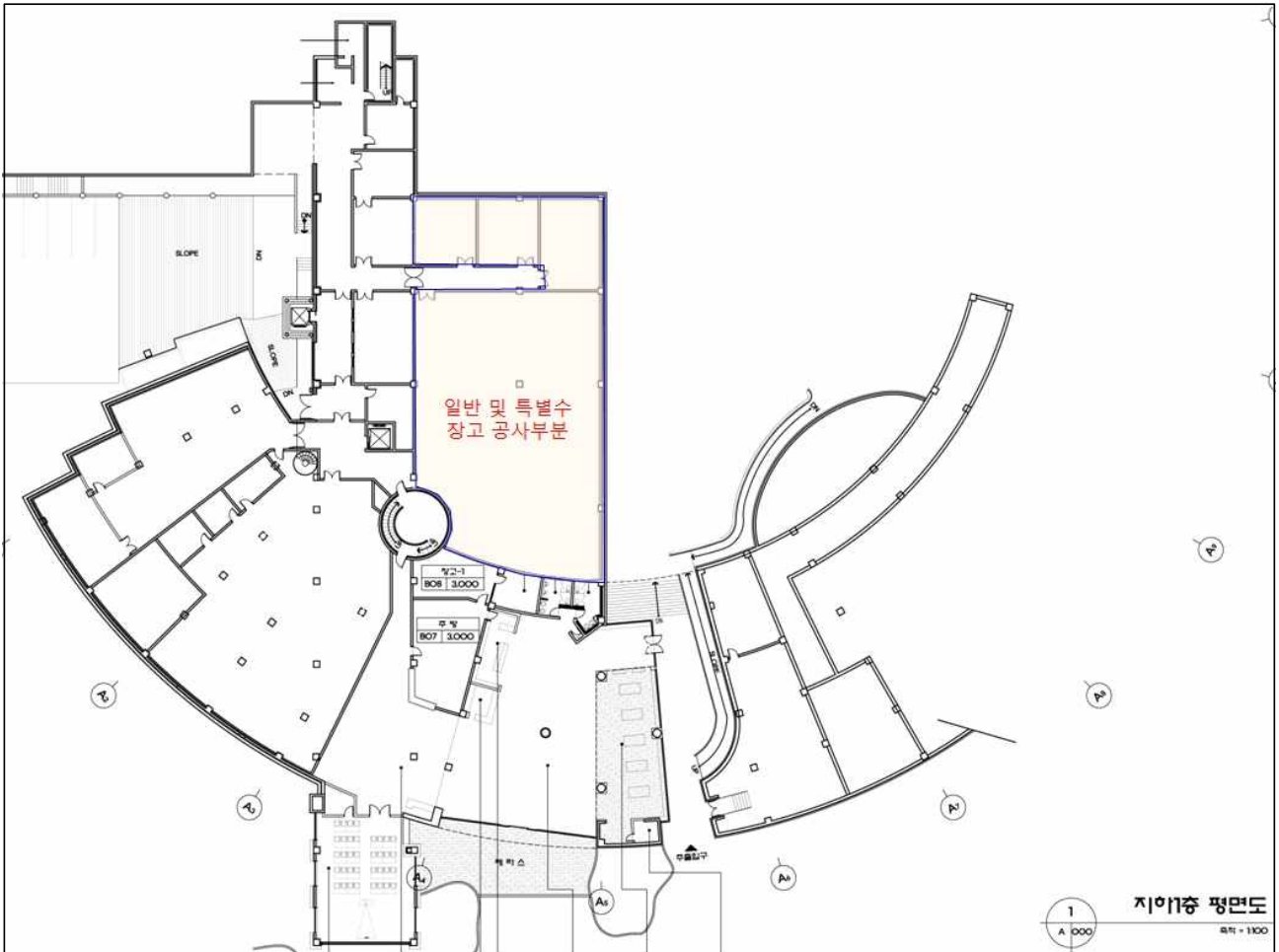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지하1층 수장고내

다. 과업범위

- 내역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자동소화장치	HFC-125 50KG(캐비닛형)	EA	14	
감지기설치	열, 연기	EA	28	
방출표시등		EA	4	
전선	HFIX 1.5SQ	M	900	
	HFIX 2.5SQ	M	110	
후렉시블	고장력 16C	M	400	
잡자재비	재료비의 2.5%	%	2.5	예산사정으로 적정비율로 조정함 (입찰시 확인요망)
공구손료	인건비의 3%	%	3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3%	%	3	
일반관리비	공무원가의 3%	%	3	
이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10%	%	10	
배선, 기구설치	내선전공	인	10	2019년도 시중노임단가
배관, 기구설치	내선전공	인	13	

- 도면



4. 과업기간

-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4일로 한다.
- 나. 공사완료 후라도 공사와 관련한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하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 수행 한다.

5. 일반 사항

- 가. 도급자는 공사과정에서 발주처의 업무협조를 통해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나.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원가계산서의 내용에 충실하며,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 및 작업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다. 본 과업 수행중, 발주처의 과업범위에 대하여 도급자의 계약전 점검, 과업범위,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적 사항의 확인누락과 점검과오, 기술적 확인 누락

등의 결함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라. 본 과업의 수행과정은 문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천연색 사진으로 작업 전, 중, 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본 공사는 시중의 일반 소방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 특기한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및 검토하여 시공한다.
- 바. 내역의 범위 이외 사소한 부분의 시공 및 자재는 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 6. 세부 지침

- 가.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 나. 반입된 자재는 내역서에 준하여 입고되도록 하며 부득이 변경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타 업체가 시공 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 공사시작 전 손상가능부분에 보양을 철저히 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 라. 공사 완료 후 장비의 정상가동 등의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 마. 최종 시운전 완료 후 소방관련 대관업무 필요시 감독자 확인 및 검토 후 진행한다.
- 바. 본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파손 등의 발생시 원상복구하고 미비시 계약 금액에서 감액한다. 특히, 수장고내 유물이 상존하는 상태의 작업이므로 출입 작업자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계약을 취소하며, 이에 따른 물적피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사. 공사중 음주, 흡연 등 안전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 발생시 공사 감독관은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7. 감독자

본 과업에서 감독자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발주자의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 8. 관련서류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착공계 등의 계약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고 감독자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 9. 현장대리인

감독관과 업무협회가 가능하고 본 과업과 연관한 설치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로 하며, 업무지시에 이행 가능하고 본 과업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 등에 업무책임자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10. 시운전

본 공사 완료하고 시운전 검사를 필한 후 공사 준공 서류를 접수한다.

## 11. 하자기간

본 공사 완료 후 하자기간은 1년으로 한다.